부 산 지 방 법 원

제 8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2가합9228 손해배상(기)
원 고	이○○
	부산 북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영철, 서은경
피 고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 장관 권재진
	소송수행자 명○○, 민○○
변 론 종 결	2012. 12. 12.
판 결 선 고	2013. 1. 1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12.부터 2013. 1. 1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49. 7.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3, 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대구10월사건

1) 대구10월사건은 해방 직후 미군정의 친일관리 고용, 토지개혁 지연 및 강압적 식량공출 시행 등에 불만을 가진 민간인들 및 일부 좌익세력이 경찰과 행정당국에 맞서 발생한 사건으로, 1946. 9. 하순경 일어난 노동자들의 전국적 총파업에 이어 1946. 10. 1. 부터 그 다음날까지 사이에 대구 지역에서 주민봉기의 형태로 발생했다.

2) 1946. 10. 1. 대구역 및 대구공회당 인근에 노동자 등 수천 명이 집결하여 경찰 100여명과 대치하면서 시작된 대구 지역의 시위는 미군정이 1946. 10. 2. 17:00경 계엄령을 선포하여 진압했으나 1946. 10. 6.까지 경북지역으로, 1946. 12. 중순경까지 남한 전지역으로 확산되었다.

나. 대구10월사건 관련 민간인 희생

1) 대구・경북 지역 주민 중 대구10월사건의 진압과정에서 검거된 7,500여 명은

취조 과정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하거나 석방된 뒤 경찰 및 우익단체에 의해 가옥과 재산을 파괴·몰수당하는 등의 보복을 당한 경우도 있고, 적법절차 없이 사살된 경우도 있었다. 이와 같이 군경에 의한 진압이 강경하자 대구10월사건 참여자 중 일부는 잠적하거나 입산 후 야산대를 조직하여 빨치산유격대로 발전하였고, 이에 맞서 경찰은 수시로 빨치산 토벌에 나섰는데, 그 과정에서 입산한 자들 뿐 아니라 주거지역에 있던 대구10월사건 관련자, 남로당 가입자와 그 가족들 또는 대구10월사건과 무관한 지역주민들 중 일부를 살해하기도 하였다.

2) 칠곡군 지천면 심천동에 거주하던 정○○(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형 정○○(대구 철도 화물 조역)이 대구10월사건 관련자라는 이유로 경찰의 감시를 받고 있었는데, 1949. 5.말경 지천지서 경찰이 마을에 들어와 망인을 포함한 마을 주민들을 칠곡경찰서로 강제연행하여 구금했다가 일부는 석방하고 일부는 석적읍 성곡리에 있는 벼랑골로 끌고 가 사살하였는데, 망인도 1949. 6. 초순경 위 벼랑골에서 사살되었다.

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

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정리위원회'라 한다)는 2005. 12. 7.부터 2006. 11. 24.까지 사이에 김○○ 외 5명으로부터 1946. 10. 초순경 경북 칠곡, 영천 지역에서 대구10월사건의 진압과정 및 한국전쟁 전 발생한 민간인 희생사건에 관하여 진실규명 신청을 받아 이를 '대구10월사건 관련 민간인희생 사건'으로 분류하고 '1945. 8. 15.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여 조사개시결정을 하였으며, 2008. 1.경부터 2010. 3.경까지 신청인들, 사건 목격자 및 진실규명대상자의 가족과 이웃, 마을주민 등 피해자 측 참고인 108명과 사건 당시 경찰 및 청년단원 등

가해자 측 참고인 20명을 조사하였고, 국회, 경찰서, 국방부 등에서 조사보고서, 신원기록편람, 경찰연혁사, 미군문서, 전사(戰史), 언론보도자료, 연구문헌, 회고록 등을 입수하여 분석·검토하는 한편, 신청인과 참고인들이 사건 발생 장소로 지목한 대구, 칠곡, 영천, 경주 지역을 찾아가 사건 관련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조사하였다.

2)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조사 결과 2010. 3. 30. '대구10월사건 관련 민간인희생사건(대구·칠곡·영천·경주지역) 진실규명결정서'를 통해 진실규명대상자 5명과 진실규명신청이 없었던 55명을 1946. 10. 초순경부터 1948. 8. 15.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의 기간 대구·경북 지역 대구10월사건 진압과정의 희생자로, 망인 등을 1948. 8. 15.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한국전쟁까지의 시기에 대구10월사건의 관련자라는 이유로 군경에 의해 희생된 희생거명자로 확인 또는 추정하면서, '이 사건의 일차적 책임은 법적 절차 없이 민간인을 임의로 살해한 현지의 경찰에게 있으므로, 피고는 대구10월사건 관련 민간인희생자 및 그 유족들에게 위령·추모사업 지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역사기록 수정 및 등재, 평화인권교육 강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다.

라. 망인의 사망 당시 부 정○○, 모 김○○가 생존하여 있었고, 사실혼 관계에 있던 원고 이○○(1949. 8. 30. 망인과 혼인신고)과 사이에 자녀로 장남 정○○, 차남 정○○을 두고 있었다. 이후 정○○은 1951. 12. 7.에, 정○○은 1965. 3. 5.에, 김○○는 1966. 3. 7. 각 사망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그 소속 군경에 의해 대구10월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에도 적법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희생당한 망인 및 그 유족들에게 국가배상법에 따라 정신적 손

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

과거사 청산을 목적으로 하여 주로 간접증거나 전문증거에 의존하여 내려진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 결과만으로 망인을 대구10월사건 관련 민간인희생 사건의 피해자로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고, 설령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그 주장처럼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였다 할지라도,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망인 및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될 무렵인 망인의 사망일을 기준으로 5년이 훨씬 지난 후에 비로소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살피건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상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설립 목적과 그 법적 성격, 진실규명결정에 대한 불복절차의 내용과 그 결정의 효력, 그 결정에 따른 국가의 의무 및 후속조치 등에 관한 전반적인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위 법률에 따라 설치된 독립된 기구이기는 하지만 당해 위원회를 행정청이나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 볼 수 없는 이상 과거사정리위원회가 한 진실규명결정이 구속력 있는 행정처분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그 결정에서 희생자로 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그러한 자들을 희생자로 인정하여야 한다거나 또는 당해 결정에 추정력이 발생하여 국가가 반대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한편, 과거사정리위원회도 법률에 정해진 권한과 업무 범위 내에서 사실 조사를 하고 결정을 내리는 이상,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도 희생자인지 여부에 관한 증거가 될 수 있고, 이 사건은 국가적 혼란기에 경찰이나 군인 등 국가권력에 의해 다수

의 피해자들이 집단적·조직적으로 연행되어 적법절차 없이 살해된 사건이 대부분이고, 그 과정에서 가족들에 대한 통지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유족들이 피해자들의 사망 여부나 사망 경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사건 당시로부터 이미 오랜 세월이 경과하여 유족들이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도 어려우므로, 법원은 위 진실규명결정의 내용과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 확보된 공부상 기록 및 위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신청인 및 목격자 등 참고인에 대한 진술조사 내용, 기타 관련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사건 당시의 불법행위 여부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과거사정리위원회가 망인을 대구10월사건 관련 민간인 희생거명자로 확인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 나타난 관련자들의 진술내용과 당시 정황에 더하여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망인의 부친 정○○은 1960. 6. 11. 망인의 피살사실을 신고하였고, 칠곡군수는 1960. 6. 24. 위 신고서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민의원내 양민피살사건 조사의원 윤○○에게 '과거 도민으로서 피살된 자 신고의 건'이라는 문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망인은 대구10월사건의 관련자 또는 가담자라는 사정만으로 피고 소속 경찰관 등으로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살해당한 피해자인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피고 소속 경찰 등이 망인을 정당한 이유 및 적법한 절차 없이 살해하여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 생명권, 적법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 희생자 및 그 유족들이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제헌 헌법(1948. 7. 17. 제정되어 1960. 6. 15.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들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위 희생자

들 및 그 유족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1) 살피건대, 원고의 이 사건 소가 희생자인 망인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1949. 6.경으로부터 5년이 훨씬 지난 후인 2012. 5. 24.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2) 그러나 한편,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따른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을 경우, 혹은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을 경우, 또는 채권자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32332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78852 판결 등 참조).

3)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국가적 혼란기에 경찰이나 군인이 빨치산 토벌과정에서 저지른 위법행위는 객관적으로 외부에서 거의 알기 어려워 원고와 같은 희생자들의 유족이라고 하더라도 국가에 의하여 진상이 규명되기 전에는 국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것은 좀처럼 기대하기 어려웠다고 할 것인 점, ② 대구10월사건 관련 민간인희생 사건에 관하여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의한 진실규명결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국가가 그 진상을 규명한 적이 없었고, 실제로 망인을 포함한 칠곡지역 주민들의 피살신고 사실을 칠곡군수가 양민피살사건 조사의원에게 제출하였음에도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 이전까지 별다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③ 국가적 혼란의 시기에 개인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조직을 통하여 집단적으로 자행하거나 또는 국가권력의 비호나 묵인 하에 조직적으로 자행된 기본권침해에 대한 구제는 통상의 법절차에 의해서는 사실상 이루어지기 어려운 점, ④ 나아가 이 사건은 국가권력이 학살을 자행한 반인권적인 중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점에서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면서 통상적으로 저지를 수 있는 일반적인 불법행위와 달리 볼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이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결정이 있었던 2010. 3. 30.까지는 객관적으로 원고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국민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는 피고가 오히려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조직적·집단적으로 희생자들의 생명을 박탈한 후 이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뒤늦게 그 유족들이 미리 소를 제기하지 못한 것을 탓하는 취지로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면서 그 채무이행을 거절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

4) 따라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손해배상의 범위

가. 위자료의 액수

1) 우리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고,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음을 선언하고 있다. 위 조항에서 도출되는 생명권은 모든 기본권의 전제가

되는 것으로서 국가는 다른 어떤 것에도 우선하여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책무를 부여받고 있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적법한 절차 없이 국민의 생명을 박탈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 사건은 경찰이 빨치산 토벌이라는 명목으로 정확한 사실확인도 없이 무고한 양민을 학살한 것이어서 어떠한 명목으로도 수긍하거나 정당화될 수 없고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아니 될 불법행위라고 할 것이다.

한편,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 학살, 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진실을 밝혀내기 위하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제정되었고, 위 법률에서 '국가는 진실규명사건 피해자의 피해 및 명예의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천명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과 같이 국가권력에 의하여 광범위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국가는 특별법의 제정을 통해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보상을 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가가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들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이 사건과 같이 또다시 시간과 비용을 들여 민사소송 등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 판결 확정 전에는 국가가 판결금을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 한 그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을 수도 없다는 점에서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국가의 노력은 아직까지도 미흡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법원으로서는 피고에게 국가의 조직적이고 의도적인 불법행위로 인하여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은 이 사건의 희생자들에게 그로 인하여 이들이 입게 된 피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을 천명하고, 그 배상을 명하여야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희생자인 망인 및 그 유족들이 피고 소속 공무원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겪었을 극심한 정신적 고통 및 한국전쟁을 치르고 난 후 우리 민족이 겪

게 된 남북분단의 현실과 이념 대립이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말미암아 그 유족들이 받은 차별과 경제적 궁핍을 고려해야 하는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구10월사건 관련 민간인희생 사건 이후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통화가치에 현저한 변동이 있었고, 그에 따라 변론종결일부터 위자료 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여 장기간 동안 배상이 지연된 사정을 위자료 원본을 산정할 때 참작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불법행위의 내용과 정도,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여야 할 책무를 저버린 피고의 불법행위의 중대함 및 그에 대한 비난가능성, 유사 사건과의 형평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하여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희생자들 본인에 대하여는 3억 원, 그 배우자는 1억 5,000만 원, 부모와 자녀는 각 9,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나. 상속관계 및 인용금액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망인의 자녀 정○○이 상속한 망인의 위자료청구권 3억 원의 1/2인 1억 5,000만 원 및 정○○의 자녀로서의 위자료청구권 9,000만 원을 상속하였다고 주장하며, 원고 본인의 배우자로서의 고유 위자료청구권 1억 5,000만 원을 더한 3억 9,000만 원의 일부로서 3억 3,0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원고는 2012. 9. 25.자 준비서면에서 원고에게 3억 9,000만 원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청구취지를 정정하지 않았으므로, 위와 같이 선해한다).

2) 상속관계 및 인용금액

가) 희생자인 망인이 사망함에 따라 망인은 3억 원, 당시 생존하였던 부 정○○, 모 김○○, 장남 정○○, 차남 원고 정○○이 각 9,000만 원, 망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

던 원고 이○○이 1억 5,000만 원의 위자료청구권을 갖게 되었다. 망인의 사망으로 그의 위자료청구권은 '호주 아닌 가족이 사망한 경우 그 재산은 동일호적 내에 있는 직계비속인 자녀들에게 균등하게 상속된다'는 구 관습법(대법원 1990. 2. 27. 선고 88다카33619 전원합의체판결 참조)에 따라 자녀인 정○○과 정○○이 각 1/2씩 상속하였다.

호주 아닌 미혼 남자인 정○○이 1951. 12. 7. 사망하였고, 당시 부인 망인은 이미 사망하였으므로, 정○○의 상속재산은 구 관습법에 따라 모인 원고가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과 원고의 혼인신고가 망인이 사망한 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위 혼인은 무효이므로, 원고에게는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배우자로서의 위자료청구권 및 망인의 위자료청구권에 관한 상속이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투므로 살피건대, 망인이 사망한 이후인 1949. 8. 30. 망인과 원고 사이의 혼인신고가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와 망인 사이의 혼인은 무효라 할 것이나, 한편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망인과 사이에 1944. 12. 24. 아들 정○○을, 1948. 2. 18. 아들 정○○을 낳았고, 1949. 8. 30. 혼인신고를 하여 망인의 부 정○○의 가(家)에 입적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할 것이어서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위자료청구권을 인정함이 상당하고, 원고가 아들인 정○○이 사망함에 따라 그가 상속한 망인의 위자료청구권을 다시 상속한 것은 원고와 망인 사이의 혼인의 효력과는 상관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는 위 금액 합계 3억 9,000만 원[= 정○○이 상속한 망인의 위자료청구권 1억 5,000만 원(= 3억 원 × 1/2) + 정○○

의 자녀로서의 위자료청구권 9,000만 원 + 원고의 고유 위자료청구권 1억 5,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3억 3,000만 원이다.

다. 지연손해금의 기산일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이행 최고가 없더라도 공평의 관념에 비추어 그 성립과 동시에 불법행위시로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발생한 일체의 사정이 그 참작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위자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국민소득수준이나 통화가치 등도 변론종결시의 것을 반영해야만 하는바, 불법행위가 행하여진 시기와 가까운 무렵에 통화가치 등의 별다른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위자료 액수가 결정된 경우에는 위와 같이 불법행위시로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보더라도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으나, 불법행위시와 변론종결시 사이에 장기간의 세월이 경과되어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 반드시 참작해야 할 변론종결시의 통화가치 등에 불법행위시와 비교하여 상당한 변동이 생긴 때에도 덮어놓고 불법행위시로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보는 경우에는 현저한 과잉배상의 문제가 제기된다. 왜냐하면 이때에는 위와 같이 변동된 통화가치 등을 추가로 참작하여 위자료의 수액을 재산정해야 하는데, 이러한 사정은 불법행위가 행하여진 무렵의 위자료 산정의 기초되는 기존의 제반사정과는 명백히 구별되는 것이고, 변론종결의 시점에서야 전적으로 새롭게 고려되는 사정으로서 어찌 보면 변론종결시에 비로소 발생한 사정이라고도 할 수 있어, 이처럼 위자료 산정의 기준되는 통화가치 등의 요인이 변론종결시에 변동된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가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불법행위시로부터 지연이자를 붙일 수 있는 근거는 전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처럼 불법행위시와 변론종결시 사이에 장기간의 세월이 경과되어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 반드시 참작해야 할 변론종결시의 통화가치 등에 불법행위시와 비교하여 상당한 변동이 생긴 때에는, 예외적으로라도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은 그 위자료산정의 기준시인 사실심 변론종결 당일로부터 발생한다고 보아야만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희생자인 망인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1949. 6. 경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2. 12. 12.까지 63년 이상 상당한 기간이 지나는 동안 우리나라의 화폐단위, 물가 및 국민소득수준 등이 현저히 변경되고 상승함으로써 불법행위시와 비교하여 환송 후 당심 변론종결시의 통화가치 등에 상당한 변동이 생겼다고 보이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2. 12. 12.부터 발생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억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2. 12. 1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3. 1.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심형섭

판사 권민오

판사 전범식